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5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김기현 · 김대식 · 임종득
김태규 · 주진우 · 김미애
김정재 · 강대식 · 윤한홍
박성민 · 김석기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 · 숙박비 · 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

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무출장의 사적 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의전·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공무출장의 사적 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 · 의견 · 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